

2025 관광기업 해외 실증 지원사업 운영 지침

기업배포용

'25. 4. 8.(화)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

□ 사업목적

- 관광기업 사업모델 수요시장 확대를 통한 국내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해외 수요기관 협업을 통한 국내 관광기업 서비스·제품 시장 검증 기회 제공 및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스케일업 기반 마련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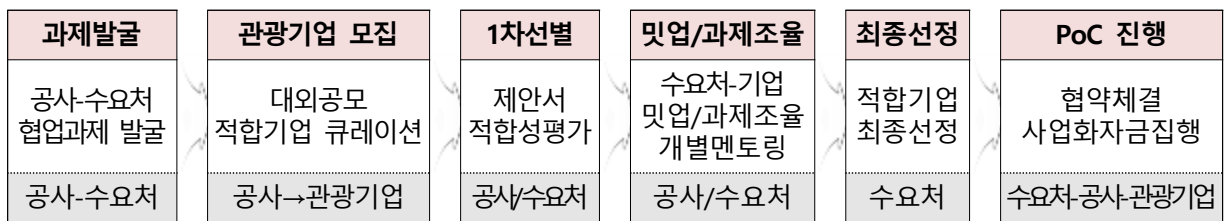
- (사업명) 관광기업 해외 실증 지원 사업 투어비에이터(Tourviator)

* 관광 'Tourism'과 비행사 'Aviator'를 결합한 의미로, 관광산업 해외 확장을 위한 실증(PoC)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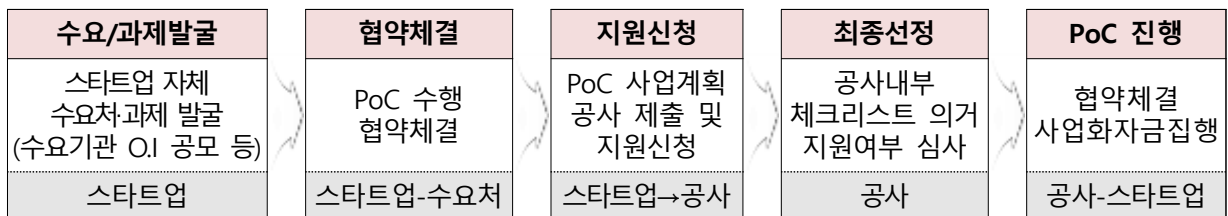
- (사업기간) '25년 연중
- (사업형태) 문제해결형, 수요기반형, 자율제안형
- (사업 운영체계)

- 문제해결형(Top-Down)

*수요기반형은 문제해결형 운영체계 준하여 추진예정



- 자율제안형(Bottom-Up)



□ 실증사업 지원개요

- (사업기간) (권장) 당해연도 10. 31까지 (필수) 당해연도 11. 21. 까지
- (지원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관광기업 중 수요기관의 과제 해결을 위한 실증사업 진행 기업
- (필수요건)
 - 공사 '20-'25 성장·도약기 관광기업 지원사업* 참여이력 보유기업
 - * 해외 KTSC 입주기업, 관광 글로벌챌린지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테크, 관광액셀러레이팅, 성장관광벤처
 - ** 단, '25년 당해연도 관광 글로벌챌린지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사업화 자금 미지원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활용 2천 만원 한도 내 실증화 경비 집행)
 - *** 이 외에, 수요과제 적합성에 따라 관광분야 내외부 Pooling 통한 기업 추천 진행
 - 해외 수요기관과의 실증사업 진행을 위한 담당 인력 보유 기업
 - (자율제안형) 해외 수요기관과의 실증사업 진행사업
(수요기업 O.I. 선정, 협약체결 완료기업 등)
- (지원분야) ① 관광 DX 솔루션 수출형, ② 인·아웃바운드 관광교류형, ③ 관광 SDGs* 기여형
 - * 자율제안형의 경우, 관광산업 분야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지원분야 작성 제출
- (지원금액) 프로젝트별 최대 2천 만원 실증 사업자금 지원
- (정의) 수요기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하는 실증사업 진행 경비로 협약 시 제출한 프로젝트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함
- (집행항목) 임차료, 인건비, 외주용역비 등 해외 실증화 사업 수행 비용
 - * 세부 집행지침 및 집행항목 붙임1 참조
- (지원방법) 공사-기업 협약 체결 후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집행 계획서 상 집행금액 기업 선 집행, 사업종료 후 증빙의거 정산

□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공모 및 접수)
 - (접수방법)
 - 문제해결형(Top-Down): 프로젝트 별 투어라즈 공모 통한 서류 접수

· 자율제안형(Bottom-Up): KTSC 센터별 접수 (이메일 등)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양식
문제해결형 (Top Down)	실증사업 제안서	양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해당 시)	-
자율제안형 (Bottom up)	실증사업 계획서	양식2
	해외 파트너와 PoC 진행 증빙서류 전문 사본 (NDA, 계약서, 협약서 등)	-
	수요기관 소개자료(국문 혹은 영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해당 시)	-
사실 확인서	양식4	

○ (심사절차)

- 문제해결형(Top-Down): 수요기관 프로젝트 별 공모→제안서 서류 심사(배수 제한 없이 적합성 절대평가)→미팅 및 과제조율→최종 선정 및 PoC 진행
- 자율제안형(Bottom-Up): 공사 지원 적합성 서류심사→PoC 진행

○ (평가항목)

- 자율제안형(Bottom-Up): 기업 제출 제안서 의거 실증사업 적합성, 협력 구체성, 계획 적합성, 현지화 가능성, 수요처 적합성, 성과 및 기대효과 등 종합 절대평가
- 문제해결형(Top-Down): 최종 기업 선정은 수요기관에서 선정하며 적합 기업이 없을시 기업 미선정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 (전자협약체결) 붙임2의 내용으로 공사-관광기업 전자협약 체결
- (제출서류) (양식)실증사업 계획서, 해외 파트너와의 PoC 진행 증빙서류(NDA, 계약서, 협약서) 등

제출서류	양식	비고
실증사업 계획서	양식2	제출 후 수정불가
해외 파트너와 PoC 진행 증빙서류 전문 사본 (NDA, 계약서, 협약서 등)	-	기제출기업 제외
서약서 및 확인서(청렴, 중복수혜, 성희롱)	양식5	
카드정보 확인서	양식6	법인카드
사업비통장 사본	-	정산 시 입금받을 법인명의 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양식4	기제출기업 제외

- (의무사항)
 - 협약체결 후 선집행 후정산 원칙에 따라 기업에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관련 증빙과 함께 보고서 제출 후 정산
 - 수요기관과 PoC 협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중도 협업 결렬 시 지원 취소 및 사업비 미정산

□ 사업관리 및 보고

- (중간보고) 협약 후 약정된 중간시점 이내 (단순일수 기준 50%)
 - (제출서류) (자유양식) 중간결과보고서, (양식8) 사업비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증빙양식
- (최종보고) 사업 종료 후 1주일 이내
 - (제출서류) (양식7) 최종 보고서, (양식8) 사업비 최종 정산신청서 및 증빙양식
- (사업비 정산)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제출서류 바탕으로 회계법인 검토(1차) 및 공사 담당자 검토(2차) 후 집행 인정금액 지급

붙임1
해외 관광산업 실증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지침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세목	내용
임차료	(사용용도) SaaS 구독료, 단기 행사를 위한 장소 임차료, 장비 리스료
	(증빙서류)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 증빙사진
	(주의사항) 일반 사무실 임대료 정산 불가
국외여비	(사용용도) 실증 사업 수행을 위한 본 사업의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현지 출장비 (항공권)
	(증빙서류)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영수증), 항공권, 출장결과보고서
	(주의사항) ① 항공권은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함 ② 사업계획서 내 참여인력에 한해 지원 가능
재료비	(사용용도) 시제품 및 실증사업을 위한 제품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소모성 재료비
	(증빙서류)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영수증), 견적서(혹은 거래명세서),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증빙사진 포함된 검수조서
	(주의사항) 귀금속, 보석, 원석 등은 구매 불가
외주용역비	(사용용도) 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전문분야 외부 업체 의뢰 용역비
	(증빙서류)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결과보고서
	(주의사항) 용역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 연관성 필수
광고선전비	(사용용도) 실증사업을 위한 영상물·리플렛·책자 등 콘텐츠 제작, 광고게재 등의 홍보광고비
	(증빙서류)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영수증), 계약서, 인보이스 등 내역서, 결과보고서, 광고증빙서류(제작물 혹은광고게재 사진 등)
	(주의사항) 경품 지급비 사용불가
인건비	(사용용도) 대표자 제외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소속 직원 통상임금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이력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급여대장, 임금확인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업무수행내역서
	(주의사항) ①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② 기업 대표와 민법 제767조상 친족관계 있는 자의 경우 지급불가 ③ 타지원사업과 합산 인건비 참여율 100퍼센트 초과분 지급불가 ④ 4대 보험은 개인 부담분은 인정하나, 사업자 부담분 불인정 ⑤ 성과금 및 타 사업 중복 지원 시 사업비 활용 지급 불가 ⑥ 사업자는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등 국가법령 위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시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완납을 증명하여야 함

○ (집행 관련)

- 사업계획서 내 지원비 세부집행계획에 대한 집행금액을 법인카드 결제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기업 자체 선지출. 사업 종료 후 증빙 의거 정산
- 집행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는 수행기업을 수취인으로 발급된 전자 세금계산서만 인정하며, 카드 영수증은 양식6을 통해 정보가 제출된 법인사업자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분만 인정
- 위 '사업비 편성 집행기준' 외에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 불가하며, 위 항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본 사업과 무관한 지출건의 경우 정산 불가
- 기타 동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관광벤처사업 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을 따름

□ 정산 관련 유의사항

- 기업이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 및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정산불가 (해당금액 제외하고 정산)
- 정산은 중간 및 최종, 총 2회 진행
- 증빙서류 미비하거나 지침에 허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사용된 경우 불인정
 - 해외 거래 시 집행 당시 공사 고시 내부 환율기준 적용
 - * 한국관광공사 분기별 고시 배정환율 운영 중
 - 최종 정산서류 제출 이후 추가 보완 불가
 - 신청기업은 지원금을 본 프로젝트를 위한 용도에만 이용해야 하며, 산출내역에 단가, 건수, 인원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함. 타 지원사업으로 동일 실증사업건에 대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본 프로젝트 결과물 도출 과정에서 타 지원사업으로 중복수혜 발생 확인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붙임 청렴서약서 작성)

『해외 관광산업 실증 지원 사업』 참여기업 협약서

한국관광공사(이하“공사”)와 참여기업 000(이하 “참여기업”) 은/는 각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외 관광산업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 대상으로 해외 수요기업 대상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화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공사”

1. 지원금액 : 실증사업비 금이천만원(금20,000,000원) 한도 내 실집행액
2. 「해외 관광산업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의 테스트베드(실증) 경비를 지원한다.
3. 테스트베드(실증) 종료 후 성과가 우수한 참여기업의 관광상품·서비스의 홍보를 지원한다.

“사업자”

1.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1.30.) 중 테스트베드(실증)사업 수행 및 정산을 완료한다.
3. 테스트베드(실증) 종료 후 정산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를 공사에 제공한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체결일~2025.11.30. 까지 유효하다. 각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협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변경) 공사와 참여기업은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후,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참여기업의 의무)

1. 참여기업은 사업수행을 위해 협약 체결 시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공사에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협약서와 사업비 세부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여 제반업무의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다.
3. 지원 경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내역을 보고 한다.
4. 실증비 정산을 위한 적격 증빙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5. 참여기업은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참여기업은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6조(협약의 해약 또는 해지) 공사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과의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지원결정의 취소 포함)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2. 참여기업이 사업화지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협약 체결 후 30일 이상 연락 불가능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사전 승인 없이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5. 참여기업이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휴·폐업 포함)
6.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7. 참여기업이 허위로 (최종)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8. 참여기업(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9.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 ① 사업비의 지급방법은 「해외 관광산업 실증 지원 사업」 사업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 ② 참여기업은 사업비 신청 시 기 공지사항 및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라 실증사업비 정산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사업목적과 부합 여부, 증빙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단, 참여기업이 제출한 정산서류 하자 등 수정·보완 사항이 필요한 경우 그 지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③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내 2회에 한하여 사업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약범위 내에서 집행한 사업비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사업비는 참여기업의 정산신청서 및 성과물에 대하여 검토 후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공사는 참여기업이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정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⑥ 참여기업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보고서 제출) 참여기업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하여 최종결과보고서(추진 실적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실적 제출) 공사는 본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협약종료일 이후 차년도에 참여기업의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이에 따른 요청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사업관련 자료 활용)

- 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성과에 대한 간행물 게재, 홍보 등 대외 업무추진 시 참여기업은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참여기업에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반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안전사고 등 책임) 참여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행 중 발생한 참가자의 안전사고, 재해, 도난 등과 관련하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은 해당 참여기업에게 있다.

제12조(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 공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 시 참여기업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참여기업은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공사는 비밀유지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관계법령의 준수) 공사와 참여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금 사용 시 아래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3.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4. 한국관광공사가 정하는 보조금 교부 조건

제15조(해석)

-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 내용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요령에 따른다.
- ② 각 당사자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분쟁 해결) 참여기업이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은 협약체결일로 하며,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당사자 모두 전자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사장 ○ ○ ○ (인)

기 업 명
 대표자 ○ ○ ○ (인)

※ 자율제안형 실증 사업 지원 신청시, 하기 평가항목 의거 공사 내부 심사 예정

구분	검토 내용
실증사업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사업(PoC)이 관광산업과 연계성이 있는가? (실증사업 하기 분야 중 1개 이상 해당 필요: ① 관광 DX 솔루션 수출형, ② 인·아웃바운드 관광교류형, ③ 관광 SDGs 기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처가 관광산업 유관 기업·기관이며, 현지에서 사업분야의 전문성과 시장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기업이 PoC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목표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C 결과물이 관광산업과 수요처의 니즈에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기술(서비스)이 실제로 관광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서비스인가?
협력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C 범위, R&R, 상호 제공 리소스 등이 명확히 나타나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처의 지원의사가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동사업(상용화, 투자유치 등) 확장 여지가 있는가?
계획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사업 시작-종료 시점이 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필수 사업 종료기간 내 종료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에 대한 세부 지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지출 가능항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팀이 해외 실증사업 추진에 충분한 전문성과 인력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목표가 명시되어 있는가?
현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규제 이슈를 인지하고 대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성과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관광의 공공적·산업적 기여가 예상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수요처 외에 추가적인 글로벌 파트너나 국내외 다른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